

디자인공예산업팀 | 2017. 11. 09.

2017년 11월 06일 민원인의 DDP 디자인재단과 디자인하우스의 계약서에 관한 정보 공개 청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서를 제출합니다.
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제7호의 사유로 서울디자인재단과 디자인하우스의 DDP 살림1관 위수탁 관리계약서는 공개 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침해 할 우려가 있어 문의 주신 사용료와 관리비만 부분공개 처리합니다.

1. DDP 사용료 책정 (2016.08.01. 기준 감정평가액)

1-1. 살림터1층 : 587,000원/m<sup>2</sup>

2. DDP 관리비 책정

2-1. 전용면적 관리비 : 실비정산

2-2. 공용면적 관리비 : 살림터1층 9,900원/m<sup>2</sup>

(공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책정하며, 인건비, 유지관리비용 등의 인상에 따라 인상할 수 있음)

참고법령
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

제9조(비공개 대상 정보) 제1항 7호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·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 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.